

무역상무학회지 제26권
2005년 5월 pp. 257~283

논문접수일 2005.04.30
논문심사일 2005.05.02
심사완료일 2005.05.10

日本-싱가포르 自由貿易協定(JSEPA)의 原產地規程에 관한 考察*

안 병 수**

-
- I. 서론
 - II. FTA와 원산지규정의 현황과 필요성
 - 1. FTA의 필요성과 현황
 - 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고찰과 주요 쟁점
 - III. JSEPA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의 분석
 - 1. JSEPA의 체결경위와 배경
 - 2. JSEPA의 주요 내용
 - IV. JSEPA의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
 - 1. 완전생산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경우
 - 2.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경우
 - 3. 불인정 공정의 범위
 - 4. 누적기준 인정범위
 - V. 결론 - JSEPA의 시사점
-

* 본 논문은 필자가 2005년 2월 24일 경제학공동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이승영, 박종삼, 박현숙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학부 부교수

이 논문은 성산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2차 세계 대전 이래 세계무역질서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GATT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된 지도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WTO의 최혜국 조항의 제약을 극복하고 이해를 함께 하는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FTA¹⁾의 중요성은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 국은 속속 FTA를 체결하여 경제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시장여건은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300여 개이고, 2004년 말 현재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62여 개에 달하고 있는 형편²⁾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칠레와의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의 타결이 이루어졌고 향후 아세안, 일본, 중국, 멕시코, EU 등과의 협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무역업계의 주장과 정부당국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TA협정과 더불어 제시되어야 할 통관절차상의 개선방안이나 원산지 규정 등의 보완방안 등은 학계에서나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FTA체결의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에 유리한 방향의 통관절차 개선방안 및 원산지 규정의 보완 등에 대하여 해외 FTA의 선례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등 무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왔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한·칠레간 FTA체결이후 적극적인 FTA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을 계기로 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 등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된 "FTA"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fta_world/fta_wor_01.ph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6개 국가·지역과 FTA의 타결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싱가포르와, 현재 한일FTA 막바지 협상단계에 다다른 우리나라 수입 순위 1위의 일본이 체결한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일본 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 이하 JSEPA 라 함"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원산지규정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체결되는 FTA내에 혹은 국내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 및 방법을 기술한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FTA와 원산지규정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JSEPA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을 검토분석하며, 제Ⅳ장에서는 JSEPA의 내용과 특징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의 근거로 삼는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양국의 FTA 및 관련 국내법령을 검토함은 물론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입법기관과 세관 등에서 입수 가능한 관련 자료 중심의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II. FTA와 원산지규정의 현황과 필요성

1. FTA의 필요성과 현황³⁾

FTA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와 이를 실체적인 국제기구로 발전시킨 WTO체제하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WTO 최혜국대우조항의 예외

WTO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과

3) 日本 財務省 關稅局, FTAの現状と今後のあり方, 平成15年 1月 30日, pp. 1-6.

징금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리적 여건이나 정치적, 문화적 여건 등의 이유⁵⁾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는 배타적인 관세상의 혜택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다음의 조건에 합치하는 FTA에 관하여는, WTO협정상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⁶⁾

첫째, 역내 원산품의,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통상규정(공서양속, 건강, 안전을 위한 제한 등을 제외)을 폐지하는 경우.⁷⁾

둘째, 역외국에 대한 관세 그 밖의 통상규칙을 FTA체결 전에 존재하였던 것보다 높거나 제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⁸⁾

셋째, 타당한 기간(해석에 따르면 통상 10년 이내)내에 관세 등의 철폐를 시행하는 경우.⁹⁾

따라서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고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GATT 협정문 제24조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GATT 협정문 제24조 제8의 (b)¹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 (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확립된 정의는 없으며, 많은 지역협정에 관여하고 있는 EC는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추정하고 있다.

첫째, 구성국내의 무역량의 대략 90% 이상을 무세양허할 것.

둘째, 주요 영역을 일괄 제외하지 않을 것.

따라서 이를 준수할 수만 있다면 FTA의 체결이 일단 가능해지며 이를 통하여 체약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의 확산에 따른 미체결국의 상대적 불이익 보호차원에서도 확산이 가속화되고

4) GATT 제 1조 : 최혜국 대우.

5)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분리되기 이전 하나의 국가, 하나의 경제공동체였던 사실로 인하여 분리된 후에도 특별한 경제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6) GATT 제24조, 다만, 1979년 GATT의 결정에 따라 개도국간의 FTA에 있어서는, GATT 제 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체결이 가능하다.

7) GATT 제24조 8. (a) (i)

8) GATT 제24조 5. (b)

9) GATT 제24조 5. (c)

10) (b) 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FTA의 WTO 보완성

WTO는 2005년 2월 16일 현재 전세계 148개국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간 협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가 같지 않은 다국간 협의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면에서 FTA는 WTO를 보완하고 있다. 즉, 다자간 협상을 양자간 협상으로 바꿈으로써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FTA를 활용할 경우 기왕의 WTO체제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이 가능하다. 즉, [표 1]에서와 같이 미국이나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WTO체제의 최혜국에 비하여 FTA체결국에 대한 무관세비율이 현저히 높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에 있어서의 대최혜국과 대FTA상대국의 관세무세비율의 비교¹¹⁾

미국	무관세비율	EU	무관세비율	일본	무관세비율
최혜국	31%	최혜국	18%	최혜국	58%
캐나다	99%	남아프리카	55%	싱가포르	93%
멕시코	90%	이스라엘	89%		
이스라엘	99%	모로코	95%		

※ 대최혜국 자료는 2001년도 현재, 그밖의 자료(일본과 싱가포르 자료는 제외)는 200년 현재 수치임.

※ 미국, EU에 대하여는 품목수 기준, 일본에 대하여는 수입액 기준 수치.

※ 일본의 대 싱가포르 자료는 STAGING품목을 포함 모든 양허품목에 관한 수치임.

※ 최혜국이란 WTO가맹국 등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있는 나라를 말함.

한편 FTA는 WTO의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WTO의 적용대상인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뿐만 아니라 WTO가 규율하고 있지 않은¹²⁾ 투자, 자연인의 이동, 지

11) 日本 財務省 關稅局, FTAの現状と今後のあり方, 平成15年 1月 30日, p. 3

12) 투자와 지적재산권의 경우 사실상 WTO는 무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정부조달의 경우 복수국가간 협정에서 다루고 있음.

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무역거래문서의 전자화 부분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FTA에 의한 거시경제부분의 효율성 추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의 최적자원배분은, 국내만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한 범위에서 비교우위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국제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쪽이 더 높은 후생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유무역론자들의 기본적 전제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면 국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만이 아니라 각국에 부존하는 생산요소를 생산공정상 유리한 형태로 조합하는 편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이익이 국민경제전체로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경제학 분야만이 아니라 경영학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져 이론바가치사슬의 구성요소를 세계 어느 곳에 입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FTA를 통하여 상품과 생산요소가 원활하게 교환될 때 경제는 좀 더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소득이 얻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높은 고용, 소득기회가 국내에 창출될 수 있다.

특히 자국산업구조와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FTA는 단순히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수출만이 아니라 저부가가치 생산요소를 해외로 진출시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국내에서는 보완적 혹은 비경합적인 고부가가치 생산공정을 창출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4) FTA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극복

FTA는 199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5년 출범한 WTO가 가맹국의 증가 및 교섭항목의 다양화로 인하여 신속한 교섭이나 합의 형성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FTA에 의해 이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를 통하여 FTA 체결의 연차별 추이를 보면 1950년대나 1960년대만 하더라도 3-4건에 불과했던 체결 건수가 1970년대 이후에는 연 1-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 10여건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지역무역협정의 연차별 체결추이¹³⁾

연대	1950- 59	1960- 64	1965- 69	1970- 74	1975- 79	1980- 84	1985- 89	1990- 94	1995- 99	2000- 26
건수	1	2	1	8	8	4	3	31	60	26

이러한 상황에서 FTA미체결국은 체결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고찰과 주요 쟁점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고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 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WTO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은 “회원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¹⁵⁾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 13)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WTO) 의 건수는 GATT/WTO에 통보한 건수이며, 중복하여 통보된 서비스 협정 및 기준의 협정에 가맹한 협정은 제외된 것임
- 14) KOTRA 해외조사팀, 일본-멕시코FTA가 멕시코시장에서 韓日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3.1.6, p. 19이하 참조.
- 15) ...rules of origin shall be defined as thos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determin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applied by any Member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1 ;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2-roo.pdf
- 16) 원산지규정은 WTO이외에도 195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원산지의 개념에 관한 결의문, 1973년 5월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총회이후 제정한 쿄토협약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첫째, 생산자 보호기능은 원산지 규정의 전통적 기능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성가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른 이점을 국가가 국제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소비자 보호기능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능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질서에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모든 국가로부터 수출입이 개방되고 있으나 국민 건강이나 안전, 자연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지역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이 가능하며, 이때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은 WTO체제하에서도 일정조건하에서는 자국의 산업발전과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별 무역통계를 무역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원산지규정은 협정국간 무역, 투자를 촉진하거나 우회수입 방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무역장벽 기능은 원산지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확인제도 등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켜 무역거래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며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GATT 제9조 및 WTO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서는 각국이 원산지표시제도를 설정 운영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대체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세관당국의 확인 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

이중 원산지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과 특정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품목별) 규정으로 분류되며, 적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ce rules of origin)¹⁸⁾과 원산지 표시, 퀴터 등 관세 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

등에도 나타나 있다.

17) 최홍석 · 류원택, 원산지이론과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p. 11-13.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¹⁹⁾으로 나누어진다.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의 핵심 내용은 원산지결정기준과 표시방법이며,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공존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① 원산지 결정 기준²⁰⁾

최근 생산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게 됨으로써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크게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실질변형기준의 2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가)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

한 국가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국은 1973년 쿠토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나) 실질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2개 이상의 국가가 물품생산에 관여된 경우에는 실질변형기준에 따라 원산

- 18)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통합체나 개도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인 GSTP, TNDC 등과 같이 특정 국가간에 쌍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
- 19)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 20) 김창태, 1997, “세계통상체제하의 NAFTA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pp.28-35; 한국무역협회, NAFTA원산지규정해설, 1994, pp. 3-5

지를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특정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변형여부의 판단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세계 통일 상품분류제도인 HS를 기초로 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한편 관세부과를 주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세번의 변경만을 원산국 결정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제조·가공공정기준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는 각 제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부가 가치기준 (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 품목에 따라 다른 기준이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²¹⁾

② 원산지 표시 제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혀위 표시 또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역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GATT 규정 제9조에서는 각국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려를 하되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원산지표시는 물품에 현저한 손

2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캠핑용 영화필름의 원산지는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이나 실질적인 가치의 감소 또는 표시비용의 부당한 증가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표시대상물품의 최소화이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모든 수입물품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최종소비자의 정보제공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품목에 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 표시요구사항의 최소화이다. 원산지표시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가능한 한 감소시키고 필요불가결한 표시사항만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셋째,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대신 포장에 표시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원산지표시의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 구매자에게 물품이 전달될 때까지 견고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WTO통일 원산지 규정²²⁾

각 국은 국제규범의 규제 없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는 원산지규정이 자국의 무역정책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국제무역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여 무역분쟁의 요인으로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²³⁾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자의적 적용 등에 따른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WTO설립협정의 부속서에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마련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당초 협상만료 기한인 2004년 7월말까지 타결되지 못하여 2005년 7월말까지로 1년 연장된 상태이다.

WTO통일원산지규정의 기본정신은 무역장벽의 철폐²⁴⁾라는 WTO의 이념에 따라 비특혜부문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이 무역

22) 한국무역협회, WTO통일원산지규정 해설, 2002. 12; 최홍석 · 류원택,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04. 4.

23) 小室程夫, 最新 原產地規則, 日本機械輸出組合, 1995, pp. 287-289.

24)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부 제2조(과도기간 중의 규율)의 다.

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수입 제한조치와 같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왜곡되지 않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규정이 무역정책수단과 연계되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국제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각국은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으며, 특혜부문에 있어서의 FTA 원산지 규정도 같지 않아 무역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원산지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표준으로서의 모범규정은 필요하며, 비록 비특혜부문의 통일규정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의 협상과 각국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국내법 및 FTA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III. JSEPA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의 분석

1. JSEPA의 체결경위와 배경²⁵⁾

1999년까지 GDP 규모로 세계30위 이내의 국가 중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뿐이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필요성을 절감한 일본 정부는 1999년 10월 일본-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검토회”가 설치되어 활동한 결과 2000년 9월 양국 정상에게 보고서를 제출·공표하였다. 2001년 1월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개시되었으며, 동 10월에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졌고, 2002년 1월에는 협정이 서명되었다.

이후 동 5월에 양국 국회로부터 비준을 받았으며, 각국의 법령 정비 등 실무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상호통지를 한 후 2002년 11월 30일부로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싱가포르는 일본과의 JSEPA를 체결하기 이전에 뉴질랜드(2000)와, 이후 EFTA(2003), 호주(2003), 미국(2004), 요르단(2004)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였다.

JSEPA는 당연히 양국의 이해가 맞아 체결에 이른 것이지만 싱가포르보다는 일본의 입장이 더 절실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의 체결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⁶⁾

첫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다자간 협상체제인 GATT/WTO에만 의존하기에는 FTA체결의 확산 등 지역불균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격심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FTA의 체결이 시급한 입장이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이점이 운송비용 등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자리적으로

25) 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 關稅分科會企畫部會, 自由貿易協定を巡る最近の情勢と關稅政策の対応のあり方に關する 企畫部會長報告, 平成13年12月3日, p. 2

26) 상계자료, p. 6를 참조하여 논자가 재구성.

인접한 국가 중에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국가로서 싱가포르가 선택되었다. 실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교역규모에서 2~3위권으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간의 체결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선택되었다.

넷째, 무역자유화에 대한 가치관이 유사하고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하여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이러한 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칠레를 첫 상대로 선택한 이유²⁷⁾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JSEPA의 주요 내용

FTA는 체약국간 교역확대를 위하여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여 통관절차와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JSEPA는 물품과 서비스의 무역은 물론 생산요소의 이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양국 간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협력을 하기위한 협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의 WTO협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FTA 특유의 기능을 잘 살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금융, 인력양성, 중소기업의 진흥, 무역서류전자화 등 타 FTA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JSEP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표 3]과 같다.

27)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2003.5를 참조할 것.

[표 3] 일본-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의 주요 내용 요약²⁸⁾

제1장 총칙	
I. 자유화 · 원활화	
제2장 상품무역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무역구제조치(2국간 세이프가드 등)의 정비 등
제3장 원산지규칙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의 방지등
제4장 세관절차	세관절차의 간소화,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등
제5장 무역거래와 문서의 전자화	무역거래문서의 전자처리촉진을 위한 협력등
제6장 상호승인	수입시에 수입국에서 필요한 절차의 일부를 수출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7장 서비스무역	GATS를 넘는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실현, 수익자의 범위확대 등
제8장 투자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확보, 투자저해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투자가·투자재산의 보호,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등
제9장 자연인의 이동	상용(商用)목적의 인적이동의 용이화, 직업상의 기능의 상호승인
제10장 지적재산권	싱가포르에서의 특허부여절차의 원활화, 양국간의 정보교환촉진 등
제11장 정부조달	상품·서비스의 정부조달에 관하여 W T O정부조달협정 기준액을 인하
제12장 경쟁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당국간의 협력 등
II. 2국간 협력	
제13장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력	양국의 규제당국간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실시, 양국 및 아시아의 금융자본시장발전의 촉진, 시장인프라의 정비촉진 등
제14장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보급,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기술표준에 관한 협력,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협력, 인증사업자의 인정·승인 절차의 원활화 등
제15장 과학기술	생명과학, 환경, 첨단 분야등에서의 개발, 연구 협력의 촉진 등
제16장 인재양성	학생·교수교류촉진, 공무원교류 등
제17장 무역투자의 촉진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에 관한 정보교환·협력사업 등
제18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협력, 양국의 중소기업간의 협력촉진 등
제19장 방송	당국간의 정보교환, 고유를 통한 방송분야의 협력 촉진 등
제20장 관광	관광진흥에 관한 정보교환 등
III. 기타	
제21장 분쟁의 회피 및 해결	협의, 조정, 중재재판을 명확히 규정. 특히 중재재판제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조문화
제22장 최종규정	개정규정, 발효일정

28) 한국관세학회, 각국의 FTA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 비교연구, 2004. 12, pp. 141-142

IV. JSEPA의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자국법을 갖고 있다. 먼저, 싱가포르의 경우 무역관련 법령²⁹⁾에 특혜관세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나 법규를 갖고 있지 않으며 FTA가 체결된 경우 이를 “Circular”라고 불리우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JSEPA의 경우에도 “Circular No : 42/2002 dated 5 November 2002”에 의해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JSEPA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³⁰⁾이 원산지규정과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특혜대상과 비특혜대상의 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이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법과 JSEPA의 규정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완전생산기준 적용 대상물품의 경우

일본의 관세감정조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으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물품은 당해국 또는 지역을 그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는 완전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표 4]의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29) Customs Act, Commodity Trading Act,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0)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 관세정률법, 관세감정조치법, 외국환및외국무역법, 수출입거래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4] 일본 관세감정조치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완전생산기준 적용 대상 물품³¹⁾

- ①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성 생산품
- ②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확된 식물성 생산품
- ③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동물 (살아있는 것에 한함)
- ④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획득한 물품
- ⑤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 ⑥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³²⁾에 의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
- ⑦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에서 위 ⑥에 게기된 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 ⑧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료 또는 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물품
- ⑨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행해진 제조시 발생된 잔존물
- ⑩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앞의 각호에 게기된 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반면 JSEPA의 관련 규정³²⁾에서는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1) 이하에서 인용되는 일본법령 및 JSEPA의 내용은 필자가 번역한 것으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32) JSEPA 제23조.

[표 5] JSEPA상의 완전생산기준 적용 대상 물품

- 본 협정의 적용상 체약국에서 완전히 획득한 또는 생산된 산품은 당해 체약국의 원산품으로 취급한다.
- 다음에 열거된 산품은 체약국에 있어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으로 한다.
 - (a) 살아있는 동물로서,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낳고 성장한 것
 - (b)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수렵, 어획,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해 획득한 동물
 - (c)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산품
 - (d)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수확, 채취되거나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 (e)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유출 또는 채굴된 광물 그 밖의 천연물질 ((a)부터 (d)에 규정된 것을 제외)
 - (f) 당해체약국의 영해 외에서, 당해체약국의 국적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획득된 수산물 그 밖의 산품
 - (g) 해당체약국의 영해 외에서, 당해체약국의 국적 공선(factory ship)상에서 얻은 또는 생산된 산품 ((f)에 규정한 산품으로부터 생산된 산품에 한함)
 - (h)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당해체약국의 영해외의 해저 또는 그 밖의 지하로부터 얻은 산품
 - (i)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산품으로, 당해영역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할 수가 없어, 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처분 또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에만 적합한 것
 - (j)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조 혹은 가공작업 또는 소비로부터 만들고 싶지 않은 것 또는 폐품인 것으로 처분 또는 원재료의 회수만에 적합한 것
 - (k)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없고 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산품으로부터 당해 체약국에서 회수된 부품 또는 원재료
 - (l) 당해체약국의 영역에서 (a)부터 (k)까지에 규정된 산품만으로부터 얻어진 또는 생산된 산품

2.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물품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은 실질변형기준의 하나로 어떤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생산 공정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행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일본 관세감정조치법시 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이

외의 물품을 그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여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무성령이 정한 가공 또는 제조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은 당해 제조·가공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감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세번 변경기준 (HS 4단위 기준)이 적용되지만 별표에서 따로 정한 품목에 따라 각각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양자의 조합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관세감정조치법 시행규칙상의 별표에 따르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품목은 HS코드 기준으로 84류, 85류, 86류, 87류, 88류, 89류, 90류, 91류, 92류이며, 부가가치비율 계산방식은 비원산지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즉, 특혜수익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가격에서 차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이 되며 이는 [식 1]로 정리할 수 있다.

[식 1] 원산지 부가가치율 산출

- 비원산지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 재료가격 / 제품가격) × 100%
- 원산지 부가가치율 = 100% - 비원산지비율

그러나 이에 대한 JSEPA의 관련 규정³³⁾에서는 [표 6]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JSEPA 제23조의 2 내지 4.

[표 6] JSEPA상의 부가가치비율기준 적용 대상 물품

- 본 협정의 적용상, 체약국에서 충분한 변경이 가해진 산품은 당해체약국의 원산품으로 본다.
- 부속서 II A에 정해진 품목별 규칙을 만족하는 산품은 체약국에서 충분한 변경이 가해진 산품으로 한다.
- 관세분류가 다른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특정의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품목별규칙의 적용상, 재료라 함은 비원산재료만을 말한다.
(a)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품목별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i) (b) 및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산품의 원산자격비율이 당해 산품에 대하여 부속서 II A에 정해진 품목별규칙에 정해진 비율이상일 것 (ii) (i)을 만족하는 생산 또는 작업이 최후로 행해진 나라가 한 체약국일 것
(b) (a)에 규정된 산품의 원산자격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 $QVC = FOB \text{ NQM} / FOB \times 100$
- 「QVC」라 함은 백분율로 표시된 산품의 원산자격비율을 말한다.
- 「FOB」라 함은, 수송방법을 막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지불되는 본선인도가격을 말함. 단, 수출시에 경감되어, 면제 또는 환불된 내국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 「NQM」이라 함은, 산품의 생산에서 생산자에 의해 사용된 모든 재료의 비원산자격가액이며, (c)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c) (b)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비원산자격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 $NQM = TVM - QVM$
- 「TVM」이라 함은, 모든 재료의 가액의 총액으로 함
- 「QVM」이라 함은, 모든 재료의 원산자격가액으로 함

일본 국내법³⁴⁾에 따르면 위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수익국으로 수입된 때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과세가격은 GATT 관세평가협정에 의거한 당해물품의 실제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가격은 CIF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의 가격, 즉 원산지 결정대상 수입물품의 가격은 특혜수익국의 수출가격(FOB)를 기준으로 한다.

34) 관세감정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2.

부가가치 계산에 있어서 중간생산물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 수익국내의 완성품 제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쳐 새로운 중간 생산물이 된 경우 그 전체를 원산재료로 간주하지 않고, 중간 생산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비는 비원산국 비율에, 나머지는 원산국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또한, 중간생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완성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대비되는 JSEPA의 관련 규정³⁵⁾에서는 [표 7]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7] JSEPA상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

(a) 각재료의 원산자격가액은,
(i) 당해재료가 (b)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재료의 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함
(ii) 당해재료가 (b)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 체약국에 속하는 당해재료의 원산가액 그 자체로 함
(b) (a)규정의 적용상, 각 재료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본 (b)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함
(i) 일방의 또는 쌍방의 체약국에 귀속할 수 있는 당해재료의 원산비율이 당해재료의 가액의 60%이상으로 할 것
(ii) 생산 또는 작업이 최후로 행해진 나라가 어느 한 체약국일 것
- 체약국에서 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액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CIF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말함)으로 함
단, 당해가격이 불명확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료에 대한 당해체약국의 확인가능한 최초의 지급에 관련된 가격으로 함
- 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 부속서 II A에 품목별규칙에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름
(a) 당해재료가 당해산품에 대한 부속서 II A에 정해진 품목별규칙이며 관세분류의 변경 또는 특정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비원산재료로는 보지 않음
(b) 당해재료가 당해산품에 대한 부속서 II A에 정해진 품목별규칙이며 부가가치기준을 쓰는 것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원산자격을 갖는 재료로 볼

35) JSEPA 제23조의 5 내지 7.

3. 불인정 공정의 범위

관세감정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단서에 따르면 실질변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부품조립, 병입, 절단·선별, 개장·구분, 수송 보존을 위한 건조·냉동·염수장 등의 행위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JSEPA³⁶⁾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8] JSEPA상의 불인정 공정의 범위

- 다음의 작업은 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충분한 변경으로 보지 않음
 - (a) 수송 또는 보존 중에 산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건조, 냉동, 소금물에 담그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 (b) 개장(改裝) 및 분류
 - (c) 산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별표시를 붙이는 것
 - (d) 조립된 것을 분해하는 것
 - (e) 병, 케이스 및 상자에 담는 것, 그 밖의 다른 단순한 포장작업
 - (f) 단순한 절단
 - (g) 단순한 혼합
 - (h) 완성품을 위한 단순한 부품의 조립
 - (i) 물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
 - (j) (a)부터 (i)까지의 작업중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4. 누적기준 인정범위

관세감정조치법 시행령 제50조 3호 및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누적가공·제조증명서”에 따르면 특혜 수익국 중 ASEAN국가는 특별우대하여 누적기준이 적용되며, 이 기준에 따르면 ASEAN의 2개 이상 국가(일본으로 수출한 국가 포함)에 걸쳐서 생산된 물품은 ASEAN 회원을 1개의 국가로 간주하여 원

36) JSEPA 제26조.

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ASEAN 수개국의 원재료는 ASEAN 전체의 원재료로 간주되고, 또한 ASEAN 수 개국에서 수행된 가공제조는 ASEAN 전체의 계속된 가공제조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JSEPA의 관련 규정³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9] JSEPA상의 누적기준 인정 범위

- 어느 일방의 체약국이라도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된 산품이 타방 체약국의 원산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산품에 대한 생산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체약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일방 체약국에 있어서의 생산을 당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생산으로 보는 것으로 함
- 체약국에 있어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생산자가 다른 단계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은 모두 당해 체약국에서의 생산으로 함

V. 결론 - JSEPA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FTA인 JSEPA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FTA추진 전략 및 원산지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과거와는 달라진 대외경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주도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방편이 필요하다. 또, WTO의 무역촉진기능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빠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FTA를 통한 통상전략의 다변화 및 협상력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

37) JSEPA 제24조

한편, 국내 경제여건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IT관련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줄 것이 분명하지만,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FTA의 대상국가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와의 최종 타결이 발표된 상태이며, 그밖에 일본, 미국, 멕시코, 태국, 뉴질랜드, 한중일, ASEAN 등과 FTA를 추진중이다. 현재 FTA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국가와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체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시장규모, 교역규모, 경쟁관계, 전략적 위치, 직접투자유치 가능성, 통상마찰 정도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 요인으로는 기업의 관심정도, 취약산업 분야의 저항, 상대국의 관심 등 실현가능성이 관건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국인 일본과의 FTA체결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들은 FTA체결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나, 농업계,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FTA의 부작용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간 누적된 무역적자와 기술력의 차이, 민족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대정서가 남아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FTA 현안을 정리한다면 DDA협상에 따라 관세는 인하추세이므로 중첩되는 요구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기술이전, 전략자원 이동 원활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 주로 고관세적용품목의 관세철폐, 직접투자환경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이동의 편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자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FTA의 체결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대응면에서는 먼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즉, 원산지규정은 표면적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국가를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의 실현,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GATT에서도 원

산지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기능별 원칙의 설정을 선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대국과의 협평 및 여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이익이 규정 내용에 따라 상충 내지는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관 부처 또는 이해집단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기적 회의체 등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TA의 체결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전략을 세분화해본다면 완전생산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큰 차이 없이 유사하나, 해저나 지하, 우주 등 특정 지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해와 역외바다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산업의 발전정도나 대외의존도 등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 기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가 큰 차이 없이 유사하나, 역내(국내) 재료비 계상기준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발전의 정도와 역외재료비의 투입비율 등을 감안하여 정교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불인정공정의 경우 내용상 각국이 유사하며 대체로 예시적 규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일 FTA의 체결에 있어서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세양허계획 관련 전략을 들 수 있다. 실제 JSEPA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다른 이행 일정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4단계에 걸쳐 양허하는 것으로 부속서(부속서 I)를 작성하였고 이는 244쪽에 걸쳐 매우 상세히 규정한 것임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단 2줄의 이행일정을 규정함으로써 곧바로 특혜조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약 당사국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동일한 이행 일정이 아닌 상호 차별화된 이행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칠레와의 FTA협정에서도 활용한 바가 있다. 양허일정계획은 무엇보다도 국내 각 분야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입장이 개진되는 연구회 등이 설치되어 이를 통하여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 김창태, 1997, “세계통상체제하의 NAFTA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2003.5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 최홍석·류원택, 원산지이론과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 한국관세학회, 각국의 FTA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 비교연구, 2004. 12
- 한국무역협회, NAFTA원산지규정해설, 1994
- _____, WTO통일원산지규정 해설, 2002. 12
- KOTRA 해외조사팀, 일본-멕시코FTA가 멕시코시장에서 韓日경쟁관계에 미
치는 영향, 2003.1.6

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 關稅分科會企畫部會, 自由貿易協定を巡る最近の情勢と關
稅政策の対応のあり方に關する 企畫部會長報告, 平成 13 年 1 月 30 日
小室程夫, 最新 原產地規則, 日本機械輸出組合, 1995
日本 財務省 關稅局, FTAの現状と今後のあり方, 平成 15 年 1 月 30 日

GATT 1948

JSEPA

Singapore Customs Act

Commodity Trading Act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日本 關稅法

關稅定率法

關稅暫定措置法

輸出入取引法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

ABSTRACT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JSEPA

Ahn, Byung Soo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suggestion for the Korea to make the FTA's rules of origin with Japan and other countries by analyzing JSEPA's rules of origin.

It was founded by the investigation of JSEPA's rules of origin, most of the provisions are similar with other FTA's for instance NAFTA, but a little provisions different from other FTA's. It is an appearance from the contracting party's peculiar circumstances such as state of industrial development or future prospect, conditions around international trade.

Then,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form and support a commission of FTA from various circles. In that case the commission will mediate conflict and disharmony. Moreover the commission may consider in all FTA's aspects including rules of origin.

Consequently Korea will and should have criterions about the rules of origin allowing for peculiar circumstances of Korean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ey Words : JSEPA, Japan, FTA, Rules of Origin